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57 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이기헌・박수현・채현일

박해철 • 김준혁 • 이해식

박희승 • 강준현 • 조인철

박선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(이하 '수사기관등'이라 한다)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 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.

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각 호외의 부분 중 "제4항까지의"를 "제5항까지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 때(법원이 요청하는 때를 제외한다)에는 미리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⑦ 제4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통보 유예 요청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보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4항 후단 중 "제4조의2제4항"을 "제4조의2제5항"으로 한다.

-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7조제4항 후단 중 "제4조의2제4항"을 "제4조의2제5항"으로 한다.
- ③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제3항 중 "제4조의2제5항"을 "제4조의2제6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	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
의 통보) ① ~ ③ (생 략)	의 통보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④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
	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회
	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
	때(법원이 요청하는 때를 제외
	한다)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
	<u>얻어야 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	<u>⑥</u>
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	
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	
<u>제4항까지의</u> 규정을 적용한다.	<u>제5항까지의</u>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제4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
	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	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제7조(과태료) ① 제3조·제4조의	제7조(과태료) ①
2제1항 및 <u>제5항</u> (제4조의2제1	<u>제6항</u>
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	
다) • 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	
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	

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